

1 공공구매 실적 평가

관련사업 : 시·자치구 공동협력사업(舊 인센티브사업) <서울 희망일자리 만들기>

대상기간 : 2015. 9. 1 ~ 2016. 8. 31(1년) ※ 평가시점 : 2016. 9월~10월

2016년 사회적경제 시장 활성화부문 평가지표

평가분야	평가항목	세부지표	배점기준						배점
성과목표	구 분		2016년	2017년	2018년				
	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비율		25%	30%	35%				
사회적경제 시장 활성화 (30)	사회적경제 시장 확대 (15)	①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물품·공사·용역 등 구매비율	비율(%)	25 이상	20~25	15~20	10~15	10 미만	10
		점수	10	9	8	7	6		
	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및 육성(15)	②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쇼핑몰 구매액	구매액(천원)	3 이상	2~3미만	1~2미만	0.5~1미만	0.5 미만	5
		점수	5	4	3	2	1		
		③ 중간지원조직 인력 운영 실적	○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을 민간 위탁방식으로 운영(5점) ○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또는 인큐베이팅사업 운영(4점) ○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운영계획(구청장 방침) 수립(2점)						5
④ 홍보 실적	건수	51~	41~50	31~40	21~30	11~20	1~10	5	
	점수	5	4	3	2	1	0.5		
⑤ 사회적경제 지원 우수사례, 시책 발굴 실적	발굴건수	5~	4	3	2	1		5	
	점수	5	4	3	2	1			

공공구매 관련 세부평가 기준

①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물품·공사·용역 등 구매비율(10점) : %

비율	25%이상	20~25%미만	15~20%미만	10~15%미만	10%미만
점수	10	9	8	7	6

○ 구매(계약)비율 : %(소수점이하 2자리까지)

- 산출식 : 구매(계약)비율

= <사회적경제기업 물품·공사·용역·일반 구매(계약)액 : 천원> / <물품·공사·용역·일반 총구매(계약)액 : 천원>

○ 총구매액 산출방법 : e-호조)사회적기업구매실적(통계자료) 총구매액

○ 사회적경제기업 : 인증(예비)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협동조합, 중증장애인, 자활기업

○ 증빙자료 : 공공구매통합관리시스템, e-호조)기타구매실적)통계관리)총구매액

②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쇼핑몰 구매액(5점) : 「함께누리물」 구매총액

구매액	30백만원 이상	20백만원~30백만원 미만	10백만원~20백만원 미만	5백만원~10백만원 미만	5백만원 미만
점수	5	4	3	2	1

○ 용역의 경우 견적서 발급 후 계약한 건의 계약입증자료 온라인쇼핑몰에 등재한 경우 인정

○ 증빙자료 : 온라인쇼핑몰 운영기관으로부터 구매내역 실적 인증한 자료 제출

2 공공구매 공시제 추진개요

□ 추진근거

- 서대문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(2015. 11. 4. 제정)

제8조(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제출) 다음 연도 본예산 확정 후 60일 이내 구매계획 수립, 구매실적 월별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에 기반한 공공조달 등에 관한 MOU (2015. 7. 3.)

□ 2016년 추진계획

- 공공구매 목표 : 2,171,224천원(공공구매 대상예산의 6%)
- 대상예산 : 일반운영비(사무관리비, 행사운영비), 업무추진비, 재료비, 연구개발비, 민간위탁금, 민간경상보조, 민간행사보조, 자산취득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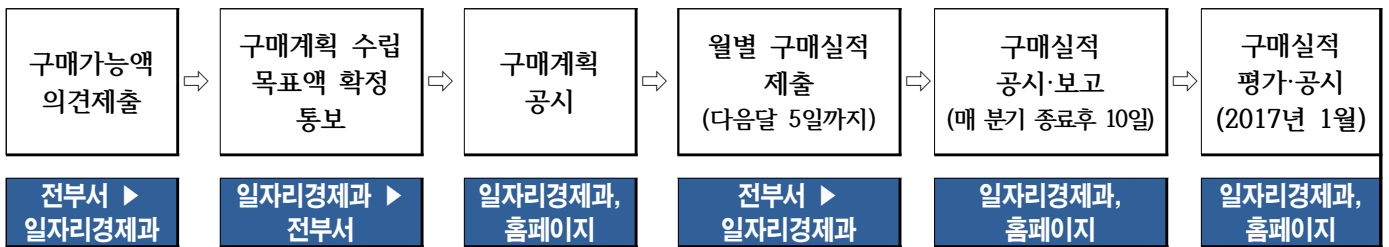
- 공공구매 예산액 및 실적 (단위: 천원)

구 분	세출 예산액	공공구매대상예산	공공구매실적	비 율
2015년도	344,850,000	28,038,946	1,661,902	5.9%
2016년도	390,398,079	36,187,086	2,171,224	6%

- 공공구매 실적 : 서울시 계약정보통합시스템 자료 참고

- 공시방법 : 서대문구 홈페이지
 - 공시내용 : 각 부서별 공공구매 목표액 및 구매실적 금액 공시
 - 공시시기 : 분기별 1회 (월1회 새올게시판에 부서별 구매실적 공개)

○ 추진절차



3 구매가능한 추천품목

함께누리몰 카테고리

복사용지	인쇄물 (인쇄물, 홍보물, 행정봉투, 간판 등)	사무용품 (문서보관함, 파일, 보존용표지, 필기구 등)	생활용품 (행사용품, 주방용품, 휴대코용품 등)	식품 (간식, 도시락, 음료, 쿠키 등)
화장지/종이컵	청소/시설관리/돌봄 (청소, 시설관리, 시설공사, 간병, 안전용품 등)	가구/사무집기 (사무용가구, 책상, 의자, 테이블 등)	도서/교육/공연 (도서, 강좌, 여행, 공연 등)	전산/전자제품 (모니터, 컴퓨터, 휴대용메모리)

구매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목록

업종	업체명	연락처	업체구분	이용방법	위치
인쇄 및 홍보물	상상디자인협동조합	070-5035-3008	협동조합	직접 문의	관내 (신촌동)
	EM 실천	02-875-9744	사회적기업	www.em21c.com	
	사단법인한국장애인 문화인쇄협회	02-2683-0955	사회적기업	www.kdmp.or.kr	
	행복한 나무	02-324-7335	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기업	www.happywood.or.kr	
	노란들관	02-469-9101	사회적기업	www.norandp.co.kr	
	사단법인 장애인 생산품판매지원협회 인쇄사업소	02-2269-5529	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기업	www.dec5523.co.kr	
	인쇄를사랑하는사람 들 네모	02-2277-7288	사회적기업	www.nemocard.co.kr	
	사단법인 아름다운 사람들 복지회	02-6948-9650	사회적기업	www.misawell.org	
사무용품	셋별재활원	031-776-0481	사회적기업제품 중증장애인제품 친환경제품	문서함, 종이컵, 봉투류 등 온라인쇼핑몰 '셋별shop' www.starfamily.co.kr	
사무용가구 /목공	공간디자인협동조합	02-773-5174	협동조합	공간디자인협동조합 문의	관내 (합동)
	(주)동연디자인	02-3482-5250	사회적기업 친환경기업	www.dongyeondesign.com	
	메리우드협동조합	1010kya@naver.com	협동조합	목공DIY교육, 제작, 판매	관내 (홍은동)
	나무마음협동조합	zoin100@nate.com	협동조합	목공예품 제작, 판매, 교육	관내 (홍제동)
	무지개공방여성문화 생산자협동조합	02-6272-5259	협동조합	목공, 수공예품 판매, 행사기획	관내 (연희동)

업종	업체명	연락처	업체구분	이용방법	위치
	함께하는여성협동조합	inock114@hanmail.net	협동조합	공방, 돌봄카페	관내 (홍제동)
도시락, 과일	(유)다솜도시락	02-324-2607	사회적기업	www.dasomislove.com	관내 (남기좌동)
	소풍가는 고양이	02-336-5090	사회적기업	http://picniccat.com/	
	오늘 담은 과일	02-324-1027	협동조합	http://blog.naver.com/to-dayfruit	
커피/음료/쿠키	구세군두리홈 카페 레드마마	02-363-5722	마을기업	직접 문의	관내 (천연동)
	(주)레그랜느	02-445-0919	사회적기업	www.lesgraines.org	
	협동조합 다다약선	070-8849-7535	협동조합	직접 문의, 한차 등	관내 (연희동)
친환경 먹거리 (다과, 선물, 청소용품 등)	서대문마을생협	02-305-7072	협동조합	[매장] 남기좌동, 북기좌동 cafe.daum.net/sdmcoop	관내 (남기좌동)
	아이쿱 자연드림 (북기좌점)	02-304-7924	협동조합	북기좌동 가재울아이파크 상가 101-102호 www.icoop.or.kr	관내 (북기좌동)
	한살림(홍제매장)	02-379-0335	협동조합	홍제동 청구상가 107호 shop.hansalim.or.kr	관내 (홍제동)
	울림두레생협 (북기좌점)	02-305-0518	협동조합	북기좌동 DMC래미안이편한세상 상가 201-15호 www.ecoop.or.kr/shop	관내 (북기좌동)
음식점	희망푸드협동조합	02-313-7782	협동조합	식사 가능(합동 SK리첵블 내)	관내 (합동)
선물/기념품	(주)오티스타	02-523-1714	사회적기업	컵, 카드, 접시 등 디자인 제품 www.autistar.kr	관내 (대현동)
	우리술협동조합	02-392-4200	협동조합	전통주, 탁주, 약주, 청주, 과실주 등	관내 (충정로3가)
	한국와인소비자협동조합	02-555-6646	협동조합	각종 와인, 와인잔 판매	관내 (홍제동)
	하나온협동조합	02-3141-2166	협동조합	기념품, 홍보물, 선물용품	관내 (연희동)
교육/문화예술	한국버스킹협동조합	02-324-5148	협동조합	공연·거리예술·문화콘텐츠 기획	관내 (홍제동)
	흥문화예술협동조합	littcompara@hanmail.net	협동조합	문화콘텐츠 기획·공연	관내 (북기좌동)
	해피세어링협동조합	02-322-2589	협동조합	상담교육, 코칭	관내 (연희동)
	지구마을청년교육협동조합	070-7136-7079	협동조합	청년교육	관내 (홍은동)
	좋은사이교육협동조합	02-395-9942	협동조합	아동청소년 인성교육, 부모교육	관내 (북기좌동)
	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	02-780-8416	협동조합	교육훈련, 연구·조사·정책개발사업	관내 (충현동)
	조지형빅히스토리협동조합	02-330-8899	협동조합	빅히스토리 교육·출판사업	관내 (연희동)

업종	업체명	연락처	업체구분	이용방법	위치
	연세코칭연구회 협동조합	02-6245-7348	협동조합	귀국자녀·경력단절여성 등 인성코칭	관내 (연희동)
	사회적협동조합 한국체험학습진흥센터	02-6263-3131	사회적협동조합	체험학습교육 위탁	관내 (홍은동)
번역	번역협동조합	02-388-0003	협동조합	번역, www.transcoop.org	관내 (연희동)
건물 수리	공간디자인협동조합	02-773-5174	협동조합	직접 문의	관내 (합동)
	한국유지보수협동조합	1899-4956	협동조합	www.koreamc.net	
	(주)하우징케어	02-379-8984	사회적기업	www.housingcare.kr	
	일촌나눔하우징	02-977-8200	사회적기업	www.joytouch.co.kr	
	(주)두꺼비하우징	02-383-2025	사회적기업	www.toadhousing.com	
청소용품	(주)장애인장학사업 장	032-330-5958	사회적기업	www.wpds.co.kr	
	(주)오피스메카	1588-7993	사회적기업	www.officemecca.com	
	(주)꿈이있는일터	070-4179-8120	사회적기업	storefarm.naver.com/kkumteo	
종량제봉투	사회복지법인 에덴복지재단	031-946-7030	사회적기업	www.edenwelfare.org	
	사단법인 우리들행복나눔	031-741-5771	사회적기업	직접 문의	
청소용역	(주)한누리	02-6084-5130	사회적기업	건물내부 및 외벽, 소독·방역, 청소용품 등 www.okhannuri.com	관내 (창천동)
조경/ 텃밭상자	(주)가든프로젝트	02-2203-9501	사회적기업	www.gardenproject.co.kr	
	(주)도농원	02-374-8830	마을기업	매장 : 홍은동, 남가좌동 씨앗 및 농작물 판매, 텃밭교육사업	관내 (홍은동)
	집밥협동조합	greenie@empal. com	협동조합	텃밭 및 먹거리 강사 파견	관내 (연희동)
LED등 외	정립전자	02-446-8536	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친환경제품	LED등, CCTV설치, 전광판 www.junglip.or.kr	
PC/모니터	(주)레드스톤시스템	02-713-0863	사회적기업	www.rstone.co.kr	
	(주)컴트리	02-858-4582	사회적기업	www.comtree.kr	
	(주)성주컴텍	1661-1537	사회적기업	www.sungju.com	

4

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관련 계약규정

우선구매 법적근거

□ 사회적경제기업

○ 서대문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

- 조례 공포 및 시행일 : '15. 11. 4
- 조례 주요 내용
 -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
 - 사회적경제기업 :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, 중증장애인생산판매시설
 -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신설
 - 구 본청, 보건소, 자연사박물관, 구의회 사무국, 도시관리공단, 출자 또는 출연기관
 - 구매계획과 구매실적 : 다음연도 본예산 확정 후 60일 이내 구매계획 수립, 월별 구매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우선구매 범위 : 물품 등을 제조·구매, 공사,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
 -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정보 공공기관에 정보제공, 관내기업에 대한 구매촉진 지원 등

□ 사회적기업

○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(공공기관의 우선구매) 제1항

-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(이하 "공공기관의 장"이라 한다)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(이하 "사회적기업제품"이라 한다)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.

○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(우선구매촉진)

- 시장 또는 서울특별시 산하기관의 장은 공사, 물품의 제조, 구매, 용역계약시 사회적기업 등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.

□ 협동조합

○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의 2(공공기관의 우선 구매)

- ①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른 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 제12조의 2(우선 구매 등)

- ① 시장 또는 시 산하기관의 장은 공사, 물품의 제조, 구매, 용역계약 시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.
- ② 시장은 협동조합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공공구매 목표제를 실시하고, 추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협동조합의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참여를 장려하며, 민간위탁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.

□ 중증장애인생산품

○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제7조(공공기관의 구매촉진)

-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.
-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.
- ③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,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에서 동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.
- ④ 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.

□ 자활기업

○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(자활기업)

-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상의 사업자로 한다.
-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, 제15조의3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 1.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
 2. 국유지·공유지 우선 임대
 3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
 4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
 5.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

우선구매 규정 활용

□ 입찰공고시 가산점 활용

○ 협상에 의한 계약시 가산점 적용

- 시 행 일 : '14.3.10
- 변경내용

구 분	평가항목	배 점				비고
		현행		개정		
		배점한도	평점	배점한도	평점	
사회적경제 기업	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	2	2	2	2	-
	사회적 기업	1.2	1.2	1.8	1.8	
	예비 사회적 기업		0.6		0.9	
	사회적 협동조합		-		1.8	
	자활기업		-		0.9	

※ 법적근거 :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3조

○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

- 시 행 일 : '14.3.20
- 변경내용

대상	심사분야 심사항목	평가항목	배 점				비고
			현행		개정		
			배점 한도	평점	배점 한도	평점	
▪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용역 ▪ 추정가격 5억~10억 원 미만인 용역 ▪ 추정가격 2억~5억 원 미만인 용역 ▪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용역 『청소, 시설관리, 경비, 주차장관리 등』	신인도	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 기업	1.0	1.0	1.5	1.5	
		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 사회적 기업		0.5		0.8	
	약자 및 우수기업	사회적협동조합		-		1.5	
		자활기업(지방자치단체 지정)		-		0.8	

※ 법적근거 :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2조

□ 입찰공고시 제한경쟁입찰

○ 시행일 : '14.4.1

○ 주요내용

- 사회적경제기업의 낙찰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자공개수의계약 금액 범위 내 7개 주요생산품목에 대하여 사회적경제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
- 시행 기관 : 서울시 및 산하기관
- 시행 대상 : 품목 및 금액 기준 모두 충족 시 의무시행

구분	7개 품목	금액기준 (전자공개수의계약 금액범위)	비고
공사	① 실내건축	2천만원~1억원 이하	전문공사 기준
용역	② 청소	2천만원~5천만원 이하	청소용역은 직접 고용으로 전환되어 자치구만 해당
	③ 행사·공연		
	④ 간병		
물품	⑤ 경인쇄		
	⑥ 화장지		
	⑦ 식품		

※ 근거 : 2013년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14호

[서울특별시 재무과-51469(2013.11.27.) 계약제도 공공성 강화방안]